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보도자료

2022. 2. 10.(목)

단장 이제관

전화 064-729-4151

팩스 064-747-0403

### 제주4·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

#### 제목

#### 제주4·3사건 첫 직권재심 청구

- 제주4·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(단장 이제관, 이하 ‘합동수행단’)은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‘제주4·3위원회)」로부터 권고받은 제주4·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. 11. 24. 광주고검 소속으로 출범하였습니다.
- 합동수행단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, 재심대상자 특정, 관련자료 수집,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.
- 2022. 2. 10.(목)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,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, 관련자료가 구비된 **20명의 수형인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**하였습니다.
- 그동안 4·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, 4·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하여 **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**입니다.
- 향후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하여 **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**하겠습니다.

## 1

### 합동수행단 출범 배경 및 구성

- 제주4·3위원회는 2021. 11. 22.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‘수형인 2,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’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였습니다.
  - 법무부장관은 2021. 11. 22. 대검찰청에 제주4·3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
- 합동수행단은 제주4·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. 11. 24. 출범하였습니다.
  - 합동수행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고검검사급 단장 1명, 검사 2명, 검찰수사관 2명, 경찰관 2명, 실무관 1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, 제주도청 4·3지원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.

## 2

###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업무 수행

- 자료수집 등 직권재심 준비
  - 제주4·3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,530명의 성명(한자), 나이, 직업, 본적지, 판정, 선고일자, 형량 등이 수기(手記)되어 있습니다.
    - ※ ‘수형인명부’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2,530명의 명단임
  - 합동수행단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행정안전부(4·3 사건처리과), 제주도청(4·3지원과)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수형인명부 분석, 인적사항 확인 및 재심대상자 특정, 각종 자료 수집, 유족 의사 확인, 마을주민 등 관련자 진술청취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.

### ● 직권재심 청구 및 공판 수행

- 합동수행단은 4·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,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,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하여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.
- 그동안 4·3사건 생존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으나, 4·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
- 합동수행단은 금일 직권재심을 청구한 20명의 수형인을 비롯하여 향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수형인들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할 것입니다.

## 3

### 직권재심 대표적 사례

#### ● 수형인 A(남, 17세) 사례

- A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1948. 12.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·25 이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.

※ A는 제주4·3위원회 희생자명부 순번 1번으로 기재됨

#### ● 수형인 B(여, 18세) 사례

- B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4·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되어 1949. 7.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·25 이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.

※ B는 4·3사건 행방불명 희생자 D와 1975. 5. 사후(死後) 결혼을 하였음

● 수형인 C(남, 21세) 사례

- C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1949. 7.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·25 이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.

※ C의 형 E(24세)도 1949. 7.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, E의 딸이 재심을 청구하여 2021. 3. 16.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, 이번에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C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음

4

향후 계획

● 향후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권고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하여 행안부, 제주도,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☑